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12 | 2023.12.05. (2023.11.27~12.0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27~12.03)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4건),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 (7건),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 (7건), 콘텐츠 분야 (2건) 등 총 신산업분야 현장규제 20건을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해소하는 한편,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개혁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64년 20억원에서 시작하여 2023년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고 있는 정부 R&D투자가 그간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에 분석하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하여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담은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한 바, 「사업자가 지켜야 할 6가지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상주체 등 매개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가 자아 실현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초로 보편타당한 공동체 가치를 형성하고 보호,
- ② 이용자가 제품·서비스의 운용 원리·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권익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정 절차를 갖추어야 함,
- ③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소통과 교류의 방식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 ④ 메타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재화·서비스 등의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
- ⑤ 이용자가 본인과 매개체의 데이터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⑥ 제품·서비스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노력을 공개하고, 메타버스가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문화·환경·경제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관련 서식 내 세부 제형을 표시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바, 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관련 규제 개선,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제출자료 명확화, 의약품의 출하 전 보고 의무 신설,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제도 개선, 특허목록에 등재사항 관련 절차 개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행정처분 정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점·출장소 설치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재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평매 방식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평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병원·세무법인·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비금융 전문서비스를 결부한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0인)**」,

규모가 작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빈집정비사업 등을 추가하고,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2/5(화)과 12/6(수) 양일간 인사청문특위에서는 대법원장(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며, 환노위에서는 12/5(화) 「과로사방지법 공청회」와 「역학조사 개선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청회」 실시, 국토위에서는 12/5(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등 논의(기획재정부) 6
-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방송통신위원회)..... 15
-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 16
- IPO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금융감독원)..... 1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8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8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8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부) 19
-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9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0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20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1

3. 법률 발의안

[바로가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23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2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2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0인) 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26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7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12인) 27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0인)..... 29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30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31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 3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32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33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27.~12.03.) [바로가기](#) 36

- [에너지·자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도입
- [바이오/헬스케어]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를 확대한 개정 의료법 시행과 대응 방안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노동] 직장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유의사항 : 관리와 감시 사이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등 논의

2023-11-27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여 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②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③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논의함

신산업분야 현장규제 20건을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해소하는 한편,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개혁시스템을 개선하고, 그간 현장방문, 기업 및 경제 협·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등 4개 분야 규제 20건 발굴·개선방안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 추진하기로 함

*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간담회 및 바이오헬스, 에너지, 모빌리티 등 분야별 간담회 개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구축 ⇨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바이오·헬스 분야 (4건)

- 1)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 명확화
- 2)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 3)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공동 설치 및 사용 허용
- 4)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 확대

- 기술발전 등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하고 범위를 확대
-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건강 증진에 기여

*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종성의원 발의)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계속심사 중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공동 설치·사용을 허용하고,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심사 대상을 확대*

* (現)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 → (改)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경우 포함

②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 (7건)

- 1) 무탄소에너지 리파워링(성능 개선) 활성화
- 2) 탄소포집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 3) 수소연료전지 등 비상전원 포함 검토
- 4) 저탄소 항공연료 세제지원 확대 검토

6)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계약 관련 부가세 납부절차 간소화

7) 가상전력구매계약(VPPA)상 REC 계약 관련 회계처리 기준 마련

-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을 포함한 태양광 · 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
 - * (태양광) 기도입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도입, (풍력) 이격거리 규제현황 등 조사
- 탄소포집산업 관련 산업특수분류를 신설하여, 탄소포집 관련 기업(CCUS*)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신규 투자 촉진
 -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 활용 · 저장
-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수소연료전지를 포함한 새로운 비상전원으로 활용 가능한 전력 공급원에 대해 종합적 검토 추진
-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세제지원 확대 검토
- 발전공기업의 경영평가시 국내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 판로지원 등을 평가하여 국산기자재 활용 유도
-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계약 관련 부가세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상전력구매계약(VPPA)상 REC 계약관련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화

③ 미래형 모빌리티 · 로봇 분야 (7건)

1) 공공부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2) 서빙로봇 보급지원 사업을 통한 우수 제조사 육성

3) 서비스용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봇산업 통계 분류체계 개선

4) 전기차 성능 측정의 효율화를 위한 배터리 전압측정방식 개선

5) 도급승인 심사서류 간소화

6) 고고도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

7) 농업용 드론 관련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 우체국 등 택배 · 물류분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하고, 치안 ·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 검토
 - *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사용자가 소유하고 공유 배터리를 장착하여 운행
→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배터리 교환시설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
- 서빙로봇 보급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우수 중소 제조사 중심으로 선정되도록 개선하여 우수 로봇제조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서빙 · 배달 등 로봇에 대한 관세통계품목분류(HSK*) 코드를 신설하는 등 로봇산업 통계 분류체계를 개선
 - *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립된 국제기준인 HS 코드를 관세청이 국내 정책목적에 맞게 세분류한 코드 체계
- 전기차 성능 측정을 위한 배터리 전압측정방식을 개선*하고, 고고도 드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도권 드론 비행 시험장의 최대 비행고도를 상향 추진하는 것을 검토
 - * (現)형식승인(환경부)을 받은 검증된 전용장비로만 측정 가능 → (改) 자기진단장치도 가능

④ 콘텐츠 분야 (2건)

1) 영화관 광고 사전심의 완화

2)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대상 및 범위 명확화

- 방송영상 등을 통해 기송출한 광고의 영화관 상영시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광고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등으로의 전환을 검토
-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수정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고, 법안 관련 세부내용을 마련

* 현재 게임산업법 개정안 2건(이상헌 · 류호정의원 발의)이 국회 문체위에 계류중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친환경 해운 솔루션 제공

-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기술개발·실증 및 녹색항로 구축·운영, 미래연료 공급망 확충 및 시장지원 등

②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

- 기술개발 및 고도화, 기술실증 및 관리·지원, 선박·항만·항로표지 인터페이스 강화 등

③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 독자적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등 기술·서비스 개발, 해양교통정보 생태계 조성, 첨단 해양교통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④ 연관산업 육성

- 친신소재 개발·활용기술 극대화, 부품·장비 등 개발, 첨단 안전관리 체계 확산 등

⑤ 지원체계 운영

- 상용화·수출 지원 및 판로개척, 국제협력 확대 및 거버넌스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비 전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으로 2050 新해양강국 실현

목 표

- ①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 : ('23) 1%(5조원) → ('27) 12%(71조원) **달성***
 * (우리나라/세계시장) ('23) 1.3%(5조원 / 362조원) → ('27) 12.2%(71조원 / 583조원) → ('40) 25.2%(331조원 / 1,316조원) → ('50) 32.2%(754조원 / 2,338조원)
- ② **국제해운 탄소 감축**('08년 대비) : ('23) 0% → ('27) 30% **저감***
 * ('23) 0% → ('27) 30% → ('30) 60% → ('40) 80% → ('50) 100% 저감(탄소중립)
- ③ **자율운항선박 기술** : ('23) 원격운항·선원승선 → ('27) 원격운항·선원**미**승선
 * ('23) 원격운항·선원승선 → ('25) 원격운항·선원미승선(대양) → ('50) 완전 자율운항

5대 전략

15개 추진과제

1. 친환경 해운
솔루션 제공

- ①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② 기술개발·실증 및 녹색항로 구축·운영
 ③ 미래연료 공급망 확충 및 시장지원

2.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

- ① 기술개발 및 고도화
 ② 기술실증 및 관리·지원
 ③ 선박·항만·항로표지 인터페이스 강화

3.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 ① 기술·서비스 개발
 ② 해양교통정보 생태계 조성
 ③ 첨단 해양교통 관리체계 구축·운영

4. 연관산업 육성

- ① 신소재 개발·활용
 ② 부품·장비 등 개발
 ③ 첨단 안전관리 체계 확산

5. 지원체계 운영

- ① 상용화·수출 지원, 판로개척
 ② 국제협력 확대 및 거버넌스 구축
 ③ 전문인력 양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장례, 산후조리 서비스가 新유망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①제도적 인프라 확충, ②소비자 만족도 제고, ③新서비스 출현 및 해외진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마련

① 장례 서비스

- 규제개선 등 제도기반 마련, 우수 인증제도 도입 등 서비스 품질 제고, 친환경 비대면 장례 등 新서비스 창출 지원
- 장례 분야에서는 30년 이상 오래된 묘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업계 애로를 적극 해소
- 산분수목장 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 확산과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등
- 화장시설 현대화 및 3차원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비대면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뒷받침

② 산후조리 서비스

-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의 합리적 개선,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 가이드라인 마련, 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
- 병원 산후조리원 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

	장례서비스	산후조리서비스
산업 발전 인프라 확충	■ <u>상조산업</u>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설치기간 지난 분묘에 대한 처리방안 개선 ■ 자연장지 조성절차 간소화 ■ 무연고 분묘 조사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근거 마련	■ 산후조리원 <u>인력기준</u> 개선방안 마련 ■ 빅데이터 기반 산후조리원 상권정보 제공 ■ <u>산후조리서비스</u> 공급기관 애로사항 정기적 조사 ■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제도화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장사시설 우수인증제도 도입 및 <u>인센티브</u> 마련 ■ 상조회사 모집인 등록제 법제화 ■ 국가재난 지정장례식장 법제화 ■ 통합 <u>상조정보제공</u> 플랫폼 구축 ■ E-하늘 <u>장사정보</u> 플랫폼 내 소비자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u>장례서비스</u> 종사자 전문성 강화	■ 우울증 관리 등 산후조리원 내 서비스 다양화 지원 ■ 산후조리원 <u>평가제도</u> 시행 및 <u>인센티브</u> 제공방안 마련 ■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돌봄 유사 경력자 연계 강화 및 산후도우미 전문성 강화
<u>新서비스</u> <u>출현</u> 및 <u>해외진출</u> 지원	■ 장사방식 선진화·다양화를 위한 신규제도 도입·연구 ■ <u>웰다잉</u>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 다회용품 사용 장려 등 친환경 <u>장례서비스</u> 산업 지원 강화 ■ 온라인 <u>추모서비스</u> 고도화 등 비대면·디지털 <u>장례서비스</u> 확대	■ 산후조리원 유망 <u>진출시장</u> 조사 및 수출 지원방안 마련 ■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컨소시엄 수출 지원 ■ KSP 등을 활용하여 산후조리 문화 선제적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함

우리 정부의 R&D 투자는 1964년 20억원에서 시작하여 2023년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고 있음. 과기정통부는 정부 R&D가 그간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에 분석하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하여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전략’에 담음

* 피인용 상위 1% 논문('12, 15위 → '21, 14위), 미국 대비 기술수준('12, 77.8% → '20, 80.1%)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연구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제기된 개선과제를 최우선으로 담고 있음

- <주요 과제>

- △ 혁신·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적극 면제, 성공·실패 폐지
- △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 단축 (약 120일 → 50일)
- △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 선정 (연구비 사용기간·회계연도 일치 단계적 폐지 검토)
- △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 △ 출연(연)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운영, 기관 간 칸막이 제거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

추진 전략 및 과제

제도혁신 | 연구자 입장에서 개혁, 도전과 혁신을 견인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도입



-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제도 도입
- 인력지도 활용, 잠재력 높고 탁월한 연구자 발굴
- 최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 단축 (특례 도입)
- 연구자에게 성과 중심 인센티브 확대
- 연구지원 시스템 고도화, 관리조직 역량 강화

R&D에 맞지 않는 규제 혁파



- 혁신적·도전적 R&D 적기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 부처별 R&D 예산 지출한도의 탄력있는 운영
- 연구과제 연중 착수 등 유연한 예산 집행
- 동일 기관 상피제 폐지 등 평가 전문성·투명성 제고

투자혁신 | 기초·원천·차세대 기술 중심, 긴 안목에서 투자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 확대



- 소규모 연구에서 적정 규모 연구로 전환
- 분산·파편화된 R&D사업 (1,200여개) 통합·재편
- 국가전략기술 등 차세대 첨단기술 집중 투자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



- 경쟁과 협력 기반, 출연연 대전환
-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
- 혁신성과 역량을 보유한 기업 선별 지원
- 젊은 과학자 성장 단계별 지원 대폭 강화

②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 이번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주요 과제>

- △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 5.4조원 + α 이상 확대 (정부 R&D 1.6% → 6~7%)
- △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수립하고, 주요 분야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추진
- △ 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추진
- △ 현지에서 글로벌 R&D 협력을 주도할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운영
- △ 해외 연구자 참여, 지재권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제도 개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글로벌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01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글로벌 R&D
투자 혁신



글로벌 R&D
포트폴리오 재정비



사업 대형화,
유연한 예산 운영

2%
기존

향후 3년간
5.4조원 + a 투자
정부 R&D에서 차지하는 비중

6~7%

글로벌 R&D
전략 고도화



글로벌 R&D 전략지도 구축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 기술 선도국·연구기관 도출, 기술 유형별 맞춤형 협력전략 제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R&D 전략거점

기존
프로젝트
+
신규
프로젝트
후보 (안)



첨단바이오

보스턴 프로젝트 등
(과기, 산업, 복지)



양자

자율주행

첨단항공

차세대 통신

수소

· 미국 워싱턴
· 벨기에 브뤼셀

· 미국 미시간
· 유럽 SHOW

· 캐나다 몬트리올
클러스터

· 미국 스탠포드大
MIT大 등

· 노르웨이 SINTEF
· 독일 프라운호퍼 등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로봇

바이오매스

차세대 원자력

· 미국 뉴욕
크리에이츠

· 미국
아르곤 연구소

· 미국 MIT
· 독일 프라운호퍼

· 미국 ARPA-E

· 미국 EPRI 등

국내 연구기관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플래그십 사업 기획·매칭,
현지 정착지원 등

해외 연구기관

»

범부처 추진체계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신설

«

02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 구축 (세계적 리더 과학자 정보)



글로벌 교류 확대
(국내 석박사 해외 방문연수 등)



우수 재외한인연구자
적극 유치



기초연구의
글로벌 R&D 트랙 강화

03

글로벌 스탠다드의 연구 생태계 조성



글로벌 기술표준 선정



전략적 국가 간 협력



글로벌 R&D 제도혁신
(해외 연구기관 참여, 지식재산권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함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현실이 연계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에게 실재감과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나, 매개체(아바타)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가상·초월을 의미하는 Meta와 세계·우주를 의미하는 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로 가상·현실의 융합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이에 방통위는 '22년부터 학계·법률 전문가, 국내·외 사업자 등 총 29인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기본원칙을 마련함

논의에 참여하였던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들(네이버, SKT, 메타 등)은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도입에 동의하였으며, 향후 약관·서비스 운영규정 등에 해당사항을 반영키로 함

기본원칙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메타버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으로, 아동·청소년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

사업자가 지켜야 할 6가지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상주체 등 매개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가 자아 실현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초로 보편타당한 공동체 가치를 형성하고 보호하도록 함
- ② 이용자가 제품·서비스의 운용 원리·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권익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정 절차를 갖추어야 함
- ③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소통과 교류의 방식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함
- ④ 메타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재화·서비스 등의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함
- ⑤ 이용자가 본인과 매개체의 데이터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 ⑥ 제품·서비스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노력을 공개하고, 메타버스가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문화·환경·경제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함

* 대체식품 :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됨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 ('19년) 103.5억 달러 → ('25년) 178.3억 달러 전망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3월)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

②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 모두 표시

* 주표시면 :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

③ 대체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3가지 항목의 세부 표시 방법

–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

< 제품명 표시 방법* >

√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한 명칭 (‘식물성’ + ○○○○)

* 예시) 식물성 함박스테이크(요리명), 식물성 불고기(요리명)

√ 대체한 원재료명을 강조한 명칭 (‘원재료명’ + ○○○○)

* 예시)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콩으로 만든 불고기

√ 동물성 원재료명·요리명 등이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

* 예시) 불구이, 베지볼, 플랜트볼

*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체식품의 제품명으로 표시

–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

–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

* (예시)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는 ‘고기 무침가’ / ‘원재료 중 00조미료에는 동물성 원료 00가 사용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관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함

*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5개 증권사(미래, KB, 신한, 대신, 신영), 코스닥협회

IPO 시장은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해 ① 상장 추진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 ② 상장 주관업무 내부통제 강화, ③ 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함을 당부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IPO시장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과제(금융감독원)

- 혁신·벤처기업 지원과 투자자보호 간 균형 유지 및 기재방식·정정요구 등 IPO증권신고서 심사체계 고도화
- 주관업무 수행체계 정비 및 상장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강화

② 상장 심사 프로세스 개선(한국거래소)

- 지난 7/27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주관사 책임이 확대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
- 이에 더해, 심사 이후 실적에 대한 투자자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예상매출에 대한 판단근거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

③ IPO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등 개선(금융투자협회)

- 기업실사 내부통제 강화 및 기술특례기업에 대한 최소 실사기간 확대, 주관회사의 독립성 제고 등 IPO 주관업무 개선 검토

II. 주요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1-28 시행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3조의3)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1-28 시행
-------	--------------------	---------------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5조)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2-02 시행예정 (다만, 제6조제1항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

주차장의 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하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6조제1항제5호나목, 제16조의23제1항, 제17조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교육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1.30. ~2024.01.15.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교육감의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기한인 30일을 45일로 각각 연장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기한 준수 예외적 근거 마련 (안 제16조제5항)**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60일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무조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②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재작성해야 할 경우 처리기한 연장 (안 제16조제6항)**
 -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이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30일까지의 기한을 45일로 연장
- ③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 승인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 연장 (안 제18조제1항)**
 - 교육감으로부터 통보 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언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연장
- ④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안 제22조제4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

※ 문의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044-203-6988, 팩스: 044-203-6438\)](tel:044-203-6988)

문화체육관광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1.30. ~2024.01.09.
---------	------------------	-----------------------------

경륜·경정 사업 과정에서 시행된 각 경주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가 의무규정 없이도 사업자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게시하고 있어 강제 필요성이 낮으므로 동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게시를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에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한 규정 정비**를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환급률 등의 게시 (안 제14조)

- 경주별 승자투표권 발매 마감 시, 경주사업자의 승자투표 방법별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 게시의무를 완화* 하고, 정보통신망에도 게시토록 함**

* '게시해야 한다' → '게시할 수 있다'로 개정

** 경주 베팅 정보 게시를 '경주장 및 장외매장' → '정보통신망'으로 확대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044-203-3119, 팩스: 044-203-3490\)](tel:044-203-3119)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1.27.
~12.07.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분리발주 예외사유 규정 (안 제8조)

- 법 제11조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명확화
- 법률은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분리발주 예외토록 규정
- 이에 따라 시행령에 분리발주 예외사유 규정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tel:044-203-389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1.29.
~2024.01.29.

의약품의 명칭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어 특허목록의 등재사항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652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관련 서식 내 세부 제형을 표시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관련 규제 개선 (안 제4조)

- 전공정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허가 신청 시 제출 자료의 일부를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속한 허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②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제출자료 명확화 (안 제24조, 별지 제23호 서식)

-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함

③ 의약품의 출하 전 보고 의무 신설 (안 제48조제22호, 별지 제49호의2 신설)

- 허가(신고)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제출이 면제된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등을 근거로 변경한 의약품에 대하여 최초 시중 유통 전 출하 관련 정보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④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제도 개선 (안 제49조, 별표8 II. 27호)

- 공급 중단 보고 기한을 180일 전으로 하고, 공급 부족의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미보고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⑤ 특허목록에 등재사항 관련 절차 개선 (안 제62조의4, 제62조의11, 별지 제59호의8 서식 신설)

- 특허목록에 등재된 사항의 변경 시 이해관계인 등 의견 청취 절차가 불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소멸 사유 발생 사실 보고 시 제출 서류, 절차 등을 마련함

⑥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행정처분 정비 (안 [별표8] II. 23, 29호)

-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와 변경 또는 폐지 미신고시 처분기준을 판매업무정지로 정비함

⑦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81호·제81호의2, 제82호서식)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서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세부 제형 등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함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21, 팩스: 043-719-2606)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01.
~2023.12.12.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점·출장소 설치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점 설치 신고 요건 (안 제6조의3)**

-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및 증자 요건을 만족하도록 규정

② **과태료 금액 (안 별표 5)**

- 지점 설치 신고의무 위반 시 원칙적으로 과태료 3천만원을, 출장소 설치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천2백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 입법제안 방법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33\)](tel:02-2100-2993)

3. 법률 발의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2023-11-28 발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중소기업의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여 생긴 피해가 2,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행법은 대기업 등(원사업자)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손해가 발생하면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기술자료의 사용 또는 제공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손해액 산정을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35조의6 신설)

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2023-11-28 발의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임명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6항)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2023-11-28 발의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건전하게 영영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거나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 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보험상품의 경우 2023년도 하반기부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 및 가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의 경우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상품판매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화상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이 현행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방식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2023-11-29 발의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자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병원·세무법인·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비금융 전문서비스를 결부한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담보권,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을 추가함 (안 제103조제1항)
- ② 신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비금융 전문기관에 신탁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 (안 제109조의2제1항)
- ③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때 신탁업자의 적정성 확인 의무, 전문기관의 계약체결 권유 시 행위 규제, 신탁업자의 점검 및 조치 의무,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권 등을 규율함 (안 제109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 ④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요건 및 수익증권발행계획 등록 의무 및 절차, 발행 한도 및 형태, 신탁재산의 평가 및 수익증권 발행가격 산정 등에 대해 규율함 (안 제110조 및 제110조의2)
- ⑤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도 증권 발행인으로서 지위를 갖도록 하는 등 그 책임을 강화함 (안 제111조제2항, 제119조제5항)
- ⑥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 또는 위탁판매되도록 하고, 계열사 판매한도 등을 규율함 (안 제110조의3)
- ⑦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수시공시, 신탁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시, 수익자집회의 구성·운영 및 투자설명서 작성·제공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110조의4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23조, 제124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0인)

2023-12-01 발의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오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잦은 과업 변경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의 내용·구조 등이 명확히 도출되도록 역량있는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오류 발생 시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각한 국민 불편·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 (안 제48조제3항제6호 신설)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안 제48조제4항 삭제)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2023-11-30 발의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함께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1항제11호 신설, 제44조제1항제2호, 제48조제2항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023-11-27 발의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입찰시장 관리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 관련”, “안전 관련” 기관·단체·법인일 것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경우 그 지정 요건을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업무에 적합한 기관·단체·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단체·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34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12인)

2023-12-01 발의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소에너지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어려우므로,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각각 신설)

- ②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안 제7조제5항 신설)
- ③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
- ④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 공유재산의 대부 ·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8조)
- ⑤ 수소에너지의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 · 이용 · 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안 제25조의9 신설)
- ⑥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안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각각 신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각각 신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각각 신설)
- ⑨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 ·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16 신설)
- ⑩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17 신설)
- ⑪ 연료전지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 ·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각각 신설)
-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제3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23-11-27 발의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콘크리트용, 도로공사용으로 3개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용도를 규정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품목 3개 중 2개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인증’)과 중복되고, 그 기준도 거의 동일하여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중단되었고, 2020년 12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를 통하여 재추진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특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주로 생산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달리 KS인증은 품질기준 준수 여부 이외에도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소비자보호 조치현황 등도 심사하여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KS인증의 통합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63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0인)

2023-11-30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30대 근로자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임에도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옥외주차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폭염·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사용자가 폭염·한파에 직접·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온열·한랭 질환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54조제2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2023-11-29 발의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수도권 지역의 원도심들은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불편의 가중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도시의 슬럼화가 가속화되며 주거환경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전국 지자체 및 원도심 주민들로부터 규모가 작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빈집정비 사업 등을 추가함 (안 제2조제2호)
- ②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하향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면적의 2분의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 ③ LH, 지방공사 등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LH나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신설)
- ④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비율 축소, 부담금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함 (안 제19조 및 제23조, 안 제31조 신설)
- ⑤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의 최소범위를 현행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함 (안 제29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2023-11-29 발의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 및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2023-11-30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익명처리를 한 정보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자율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 수집·활용 현황의 제출 및 정보 파기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 신설 등)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2/8(금) 14:00	제410회 국회(임시회) 제14차 본회의 - 안건 심의

2.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12/5(화) 13:30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정무위	법안1소위	12/5(화) 10:00	- 법안 심사
	법안2소위	12/7(목)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8(금) 10:00	- 법안 의결 등
행안위	법안2소위	12/4(월) 10:00	- 법안 심사
	법안1소위	12/5(화) 10:00	- 법안 심사
	법안1소위	12/6(수) 10:00	- 법안 심사
	법안1소위	12/7(목)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8(금) 10:00	- 법안 의결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	12/5(화) 10:30	- 법안 심사
	중소기업소위	12/6(수) 10:00	- 법안 심사
환노위	전체회의	12/5(화) 10:00	- 과로사방지법 공청회
	전체회의	12/5(화) 14:00	- 역학조사 개선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청회
	환경법안소위	12/7(목) 10:00	- 법안 심사
국토위	전체회의	12/5(화) 10:00	-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 등에 관한 보고 등
	교통법안소위	12/5(화) 14:00	- 법안 심사
	국토법안소위	12/6(수) 10:00	- 법안 심사
정개특위	법안소위	12/4(월) 14: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5(화) 10:00	- 법안 의결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12/5(화) 10:00	- 대법원장(조희대) 인사청문회
	전체회의	12/6(수) 10:00	- 대법원장(조희대) 인사청문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4(월) 10:00	K-UAM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엄태영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4(월) 10:00	의대정원 확대에 인한 입시 지형 변화 - 요동치는 수험생, 사교육 문제 진단	신현영 의원실, 보건의료특별위	의원회관 4간담회실
	12/4(월) 14:00	노골적인 청소년 성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정경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4(월) 14:00	무탄소에너지(CFE)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12/4(월) 14:00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예산의 역할	김민기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4(월) 14:00	태권도 종주국 미래발전 정책 포럼	홍문표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12/5(화) 09:30	국회물포럼 제25차 토론회 -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한 수도물 내 소독부산물 현황 및 수질 개선 정책 토론회	국회물포럼 등	의원회관 4간담회실
	12/5(화) 09:30	핵무장국 북한을 대하는 진보와 보수의 새 접근	국회동북아 평화미래포럼	의원회관 5간담회실
	12/5(화) 10:00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을 통한 언론탄압 대응 방안	국회공정사회포럼	의원회관 8간담회실
	12/5(화) 13:30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 2023 학술대회	강기윤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2/5(화) 14:00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노웅래·우원식· 윤건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12/5(화) 14:00	한국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포럼 - 고부가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모색	이용호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12/5(화) 14:00	한의학 산업진흥 공공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김태호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5(화) 16:00	어린이 잡지와 독서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강민정 의원실, 어린이문화연대	의원회관 3간담회실

	12/6(수) 10:00	AI 잠재력과 위험, 입법을 위해 알아야할 몇가지 것들	국회공정사회포럼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6(수) 14:00	2023년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종합토론회 - 의회 중심의 신산업 지원 거버넌스 구축	김진표·홍영표· 홍익표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6(수) 14:00	「공동주택관리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6(수) 14:00	제3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 정책방향	김민기·김정재· 최인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8(금) 10:00	「홀드백 법제화」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질서 복원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도입 방안 토론회	김승수· 임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2/8(금) 10:00	신해양경제를 선도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전략	안병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8(금) 14:00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	박찬대·김영호· 고영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8(금) 16:00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활성화 토론회	신동근·남인순· 박주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12/9(금) 13:30	세이프플루언서 활동 공유 대회 및 청소년 성건강 정책 토론회	한준호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12/5(화)	「팩트북」 제106호 발간 - G20 국력평가	국회도서관	
	12/6(수)	「금주의 서평」 제656호 발간 - 도서명 : 재수사 - 저 자 : 장강명		
	12/4(월) 13:00	「제8회 아시아 태평양 조정 컨퍼런스」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중앙대학교 법학관 강당
	12/4(월) 14:00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예산의 역할」 토론회 개최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6(수) 14:00	「2023년도 국회신선상산업포럼 종합토론회」 개최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1(금) 13:30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3호 발간 -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국회미래연구원	의원회관 2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호 뉴스레터(제21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27(월) 10:00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김병욱· 황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27(월) 14:00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	노웅래·임이자 의원실, 환경부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11/28(화) 09:30	이-팔(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남·북한 갈등구조 비교와 시사점	김홍걸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실
	11/28(화) 10:00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김성원 의원실, THE FACT	의원회관 8간담회실
	11/28(화) 14:00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 -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	김정재·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29(수) 15:00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간담회	김희곤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실
	11/30(목) 09:00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	하태경· 김병주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자료집 등	11/28(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237호 발간 - 프랑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세대 간 동거계약 입법례	국회도서관	
	11/29(수)	「금주의 서평」 제655호 발간 - 도서명 : 셸럽시대 - 저 자 : 김정섭		
	11/29(수)	「World & Law」 2023-22호 발간 -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함께하려면?		
	11/28(화) 14:00	「디지털분야 법률 현황과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입법과제」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27.~12.03.)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27(월)	에너지 · 자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도입
11/29(수)	바이오/헬스케어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를 확대한 개정 의료법 시행과 대응 방안
11/30(목)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11/30(목)	노동	직장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유의사항: 관리와 감시 사이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